

대전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1가단1342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김수정, 윤경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세귀

변 론 종 결 2023. 2. 9.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17. 6.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81,245,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1,2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8. 31., 이자 및 지연이자 각 연 25%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C는 2017. 6. 28. 자신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8.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0. 10. 8.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973,004,96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이는 피고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한 이상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배당받은 돈 중 원고의 채권액 한도인 181,2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1)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2)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다.
-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건축되면 즉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대여하였는바, 대여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C의 책임재산이었다고 할 수 없다.
- 4) C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무자력이었던 것도 아니다. 5)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알 방법이 없었으므로 선의이다.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1) 이 부분에 관한 피고 주장의 구체적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보관작업을 할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및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알았고, 그 때를 이 사건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보관작업을 할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또는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하여

먼저,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인인 C의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16. 8. 31.이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이 2021.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이는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1. 10. 16. 당시 E이 C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실질적 운영자라고 하여 C의 채무를 승인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포기자 외의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를 원용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

별지

1)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도 결론 부분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본안 전 항변으로 선해한다.